

결 정

2018 - 2017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

주 문

중앙일보 2018년 1월 1일자 9면 「개발호재 넘치는 강원도! 들썩이는 “평창” 잡
아라! 평창 라마다 레지던스 공급공고/10년간 7% 확정 수익 보장」 제목의 광고에
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

이 유

중앙일보의 적시 광고는 평창의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.

광고는 26㎡, 39㎡의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월세가 각각 113만원, 165만
원이라고 선전하면서 『10년간 연 7%의 확정 수익보장』이라는 표현으로 임대수익
을 장기적으로 확정 보장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.

그러나 이 광고는 현재 이자율은 높은 편인 연 7% 임대수익에 대한 객관적인
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. 현행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은 부동산 시장
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.

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, 광고내용을 믿고
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.

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, 나아가 신문
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, 3, 4, 신문광고윤리실천요
강 강령 4의 (4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 김 용 담 2.18.18

위	원	정	송	호	정우
		장	명	국	김명국
		이	동	현	이동현
		장	인	철	장인철
		김	규	식	김규식
		강		희	강희
		하	윤	수	하윤수
		김	영	모	김영모
		박	현	갑	박현갑
		박	미	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4)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